

[사 건 명] 행심 2017 - 7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은 2017. 09. 20.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2017. 11. 02. 점심시간에 5층 복도에서 ○○○이 가는 길을 청구인이 고의로 여러 차례 막았고, 2017. 11. 07. ○○○이 청구인을 췌려본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의 사진을 찍었으며, 2017. 11. 13.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청구인은 잃은 물건을 가지러 식탁으로 되돌아가고 ○○○은 급식실을 나가던 중 부딪쳤다는 등의 이유로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이하

‘학폭위’ 라고 함)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본 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은 청구인을 집단 따돌림과 손가락질, 비웃음으로 청구인에게 폭력을 가했으나 청구인이 가해학생으로 처분 결과가 나왔고 이에 청구인은 심신에 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나. 2017. 11월 급식실에서 청구인이 식사를 하는 도중 ○○○과 친구들이 식탁이 자신들의 고정 자리인 듯 청구인에게 대했고, 이에 청구인이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에게 다른 곳에서 먹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며 ○○○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 다. 피청구인측은 2017. 11. 14. 오전에 청구인의 학부모는 사전 통지나 이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5일 조치를 한다고 전화를 하였다.
- 라. 급식실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폭력을 당한 것이고 이에 청구인이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집단 따돌림을 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 자료

(회의록, CCTV 등)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청구인은 회의록이나 결과문에 대해서는 거부하였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보여주면서 부당한 조치만을 취했다.

마. 학폭위 위원들은 청구인의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심적인 피해를 입혔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7. 11. 14. 청구인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조치가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 09. 20.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직접 ‘○○○을 짜증나게 해서 욕을 하게 만들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의 가는 길을 막고 ○○○이 썰러본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고, 뒤통치를 밟고 찼으며, 서로 부딪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 4호에 근거하여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6호(출석정지 5일)를 조치·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로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오히려 가해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사안은 2017-25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조사 및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윤도영 학생의 욕설 및 신체폭행 사안이 확인되어 두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 되었고, 본 건인 출석정지 5일 조치는 2017-24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으로 이는 2017. 09. 20.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청구인이 ○○○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적·반복적으로 접근 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에 따라 어긋남이 없이 과정을 진행하였고, 관련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에 대한 일방 폭력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가감 없이 조사 자료를 학폭위에 제출·보고하여 논의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조치가 의결되었다.

라. 회의록 및 결과문 공개요청 거부에 대하여, 2017. 11. 22. 청구인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공개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당시 회의록은 작성 중이었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 공개가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긴급조치에 대한 회의록은 공개가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은 2017. 09. 20.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를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은 2017. 11. 02. 점심시간에 5층 복도에서 ○○○이 가는 길을 청구인이 고의로 여러 차례 막아서서 ○○○의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위 ○○○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신고를 받은 후에 우선 청구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 및 4호에 따라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5일을 부과하였으며(청구인은 학폭위 개최일 이전 이미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 5일은 이행한 상태임), 이후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위 긴급조치 추인을 함과 동시에 위 긴급조치(출석정지 5일)과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를 이미 받았으며, 이러한 금지조치기간 중에 ○○○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복도에서 ○○○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선 행위가 위 ○○○ 학생에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 학생의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막아섰던 이유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그 사이의 청구인과 ○○○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이미 청구인에 대해 내려진 선도조치에 위반하여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긴급조치로서 청구인에 대해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학

폭위가 개최되어 이러한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 및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등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3) 다만, 피청구인측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 5일의 처분과 학폭위 심의결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을 별도의 처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는 10일이라고 하는바, 만일 피청구인의 긴급조치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만을 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의 긴급조치 5일의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절차상 이를 다룰 수 있는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이 될 것이어서(왜냐면 관계법령에서는 긴급조치 후 학폭위 추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반면 이러한 긴급조치 처분을 받는 학생측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임) 청구인으로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받고 난 후에 별도로 학폭위에서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피청구인이 행한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에 포함시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라면 피청구인은 긴급조치로서의 5일과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하면서 그 중 이미 5일은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를 이행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출석정지는 5일만 남게 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렇게 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가 존재하므로 먼저 이러한 하자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
시정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다
투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전부 취
소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 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